



대구대학교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간



교류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(이하 '양 기관'이라 함)는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제 구축으로 우수인재 양성과 관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류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이 협약은 이공계열의 우수인재 양성과 관세분석 행정의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내용)

상호 협력 및 교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관세분석 업무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연구사항
2.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 현장실습
4. 관련 분야의 학술행사시 공동 개최
5. 보유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
6.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제반사항

제3조 (협약의 이행)

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 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본 협력과정을 통하여 인지한 상대기관의 업무내용이나 이와 관련되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상대기관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언론공개, 학술지 게재 및 학술회의 등에 발표해서는 아니된다.

제5조 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

이 협약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정종료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협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연장·종속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 (협약서 보관)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한 후,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11월 18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직무대행
부 총 장 김 덕 진

김 덕 진



중앙관세분석소
CENTRAL CUSTOMS LABORATORY
AND SCIENTIFIC SERVICE

소 장 김 상 목

김 상 목